

의안번호	2204695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4.12.31.
추계번호	24D4338

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적용 대상자)	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“5·18민주유공자”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조 (적용 대상자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법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, 그에 따른 적용대상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1] 현행법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적용대상자 수: 2019~2023년

(단위: 명)

연도	총계	5·18사망·행불자			5·18부상자			5·18기타희생자		
		합계	본인	유족	합계	본인	유족	합계	본인	유족
2019	4,410	176	—	176	2,765	2,263	502	1,469	1,316	153
2020	4,406	173	—	173	2,760	2,229	531	1,473	1,304	169
2021	4,417	169	—	169	2,757	2,185	572	1,491	1,307	184
2022	4,484	166	—	166	2,767	2,166	601	1,551	1,343	208
2023	4,481	160	—	160	2,765	2,119	646	1,556	1,331	225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적용대상자 이외에, 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1.6월)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, 수배·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, 공소기각·유죄판결·면소판결·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사람도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1.6월)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2023.7~12월 말까지 1,979명을 접수받아 8차 보상심의가 심의 중이며, 아직 적용대상자 수가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현행법은 “5·18민주유공자¹⁾”에게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, 대부, 단체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 법 제1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,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, 제34조(진료), 제40조(대부 대상자), 제7장(그 밖의 지원) 등에서 각 지원의 대상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

1) 현행법 상의 5·18민주유공자는 5·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의미함

- 5·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되더라도, 이 법에 따른 교육, 취업, 진료, 대부 등의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 제1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,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, 제34조(진료), 제40조(대부 대상자), 제7장(그 밖의 지원) 등의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